

서울남부지방법원
화해조서

사건 2020가소10000 손해배상(자)

원고

서울 () () 아파트)

피고

군산시

송달장소: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 법무사 전
종필 사무소(만성동)

판사

기일: 2021. 6. .

법원주사

장소: 별관 호 법정

공개 여부: 공개

원고

출석

피고

출석

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화해하였다.

화해조항

- 피고는 원고에게 2020. 6. .까지 금 1,050,000원을 지급한다.
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
-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
-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구의 표시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2,000,000원을 지급하라.

법 원 주 사

판 사

